

접도구역 변경 고시

「도로법」 제4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·제16조, 접도구역 관리지침 제3항 “다” 의2 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19 년 5 월 23 일

영 주 시 장



도로의 종류	국지도	노선번호	28호선	노선명	풍기~영월
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	○ 위 치 : 풍기읍 미곡리 (85-1(답), 83(전), 81-2(창), 산7(임), 82-2(전)) ○ 접도구역 변경 현황 - “별첨1” (접도구역선 변경 위치도 참조)				
접도구역 변경사유	○ 접도구역 관리지침 『접도구역 지정의 예외』 에 따라 다음지역에 대하여 접도구역을 변경함 ○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 규정 - “별첨2”				
비고					

첨부서류

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1부, (생략, 공람장소 비치)

